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최혁진의원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67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최혁진 · 민형배 · 송재봉
이수진 · 조계원 · 염태영
박지원 · 조인철 · 양부남
안도걸 · 윤종오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저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장려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 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 사.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평가

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생활환경의 보장

다. 노동의 존중, 근로조건의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라. 사회적 약자, 청년·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의 촉진

마. 보건·복지·돌봄 등 포용적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바. 중소기업·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의 확립

사.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환경보전, 자원순환 등 지속가능 발전 실현

자. 윤리적 생산·소비·경영, 투명성, 청렴성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차. 공공조달, 재정, 투자 등에서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강화

카. 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윤리, 데이터 접근성 등 디지털 전환의 공공성 확보

타. 문화다양성의 존중과 세대·지역 간 상생 및 사회적 연대 강화

파. 민주적 의사결정과 주민참여, 숙의와 협력에 기반한 주민자치·거버넌스 구현 및 공동체 활성화

하. 국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 글로벌 사회적 가치의 확산

거.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마.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

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직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추진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지역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역추진계획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지역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
2.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회적가치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위원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적가치추진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추진단을 둔다.

② 사회적가치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직원에게 포상, 성과금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 공공기관은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 민간 단체, 기관 등을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협력) 공공기관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지역추진계획 수립주기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계획기간과 두 번째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계획기간은 3년으로 한다.